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58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21일

발 의 자 : 최동철, 김성한, 김병진, 이충숙
김현희, 송순효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나. 여성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의4)
- 다.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의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

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의4(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4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5(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5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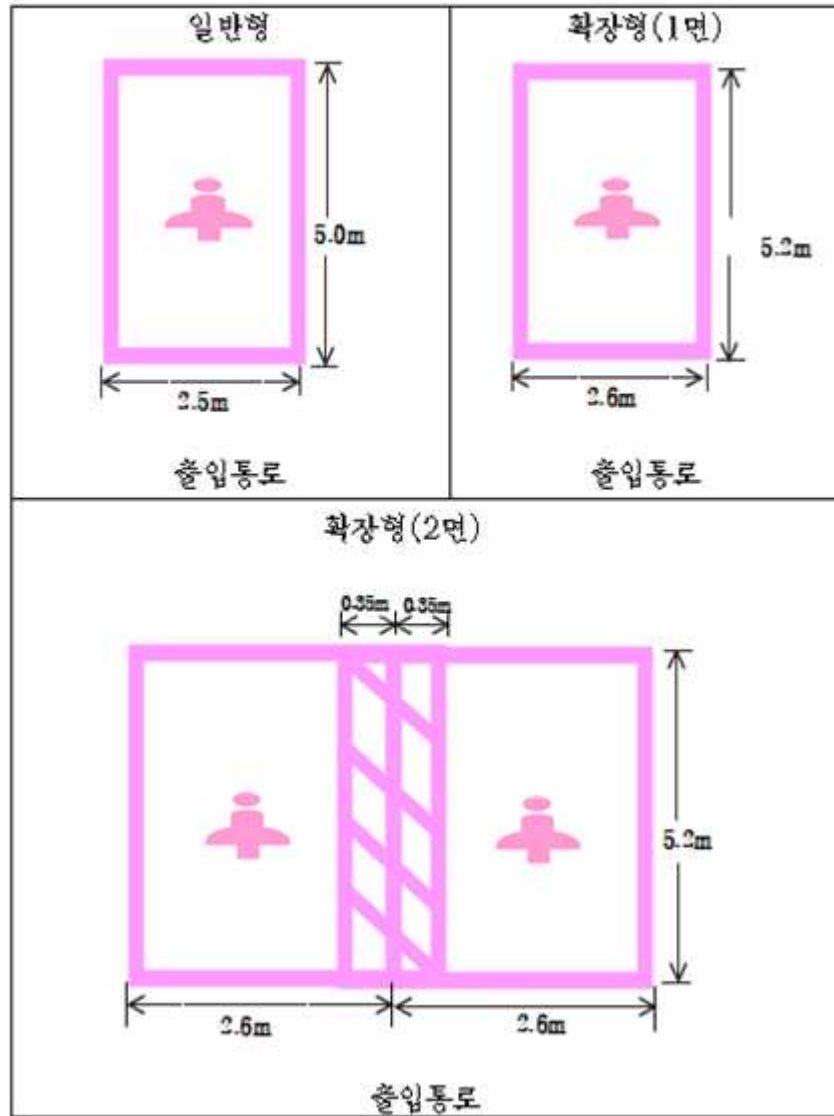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여성우선 주차구획 (제6조의4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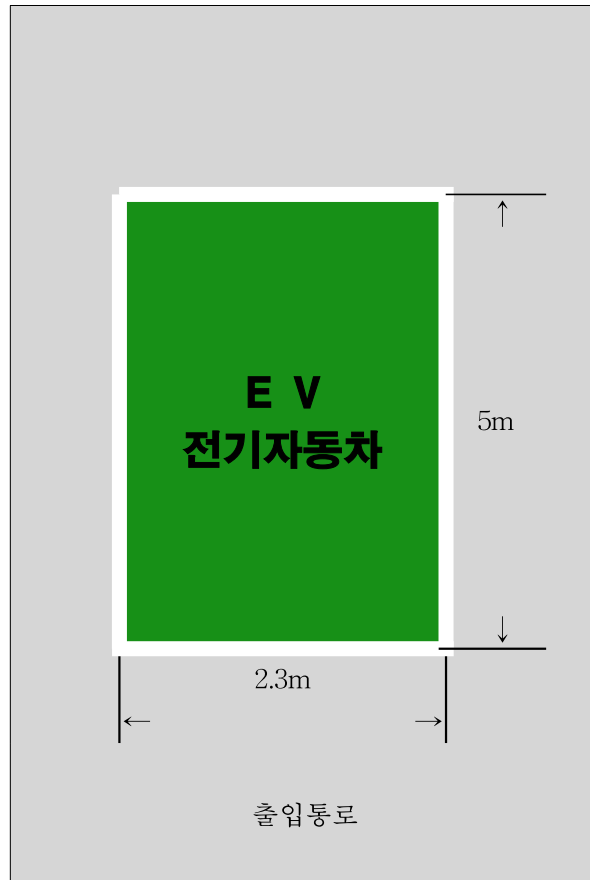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표 5]

전기차우선 주차구획 (제6조의5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p>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p> <p>③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p>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의4(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4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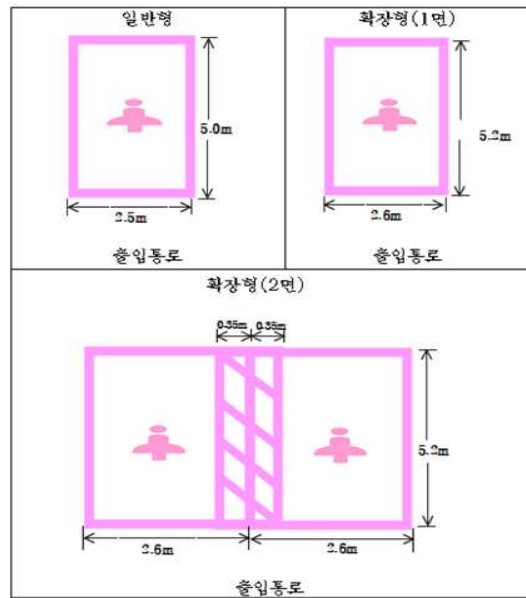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 5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4]

여성우선 주차구획 (제6조의4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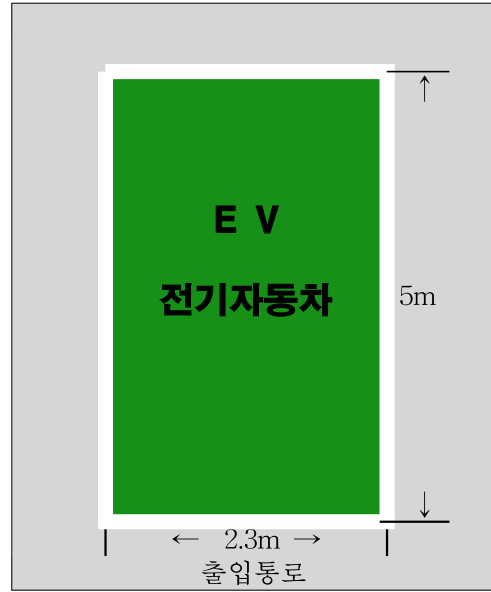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 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신 설>

[별표 5]

전기차우선 주차구획 (제6조의5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하생략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	---